



## 보 도 자 료

- ◆ 2008. 12. 22 배포
- ◆ 총 6 쪽

- ◆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: 임영섭  
담당 사무관 : 김광석
- ◆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: 백운석  
담당 사무관 : 김호은
- T E L : 6922-0958/2110-6813
- E-MAIL : taichi21@naver.com/hekim@me.go.kr
- F A X : 6922-0973/504-5472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작업 근로자와 인근주민 보호를 위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

1. '08.12.22(월) 노동부와 환경부는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·제거 과정에서 작업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「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 관리대책」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#### 2. 현황 및 문제점

- 서울에서는 총 35개 지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(뉴타운/26개, 축진지구/9개)이 진행 중으로
  - 지구를 세분한 구역별로 보면 86%인 119개 구역이 철거 중이거나 향후 철거예정으로 석면관리 대상이다.
  - 그 외 6대 광역시에서는 총 338개 구역 중(부산/193, 대구/44, 인천/38, 광주/2, 대전/44, 울산/17) 95%인 320개 구역이 석면관리 대상이다.

### 【 뉴타운사업 】

- 서울시가 종래 난개발로 이어지는 민간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
  - '02년부터 3차에 걸쳐 35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(붙임 참조)

-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보상문제 등으로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
  -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도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
  - 철거만 끝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서 사전 석면조사 없이 일반건축물처럼 중장비를 이용하여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- 이에 따라 정부는 재개발 사업주, 공사관계자 등의 석면위험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, 현장 맞춤형 안전 작업방법의 제공 및 기술지도, 「재개발 현장 석면합동대책단」 일제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
  -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함께 인근주민을 석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.

### 3. 주요 대책

- “재개발현장 석면관리 합동 정책설명회” 개최('08.12월말) 등
  - 조합설립이 인가된 뉴타운 구역별 조합대표, 시공사 및 석면해체·제거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

- 석면의 유해성 및 안전작업 수칙,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과 재개발·재건축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 등 향후 석면 환경성 노출 예방을 위한 관련 정부대책을 설명(노동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서울시 합동 설명)하고 효율적인 대책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- 또한, 참석자들은 석면해체·제거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 및 인근주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.
- 이와 별도로 시공사 및 석면 해체·제거업체의 관리감독자, 감리, 지지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**관련법규, 작업기준, 장비와 보호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**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□ **현장 맞춤형 안전작업방법 제공 및 기술지원('09. 1월~)**

- 한국산업안전공단의 6개 지역본부별로 지도요원과 민간석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「석면기술지원단」을 구성하여 이주 및 철거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 사전 조사한 후
  - 석면분포실태에 따라 각 현장에 적합한 석면제거 및 폐기물 처리방법, 장비 사용 및 보호구 사용방법, 인근 비산방지대책 등을 마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.
  - 또한, 석면 해체·제거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작업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구를 지원하고

- 석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계지역에 작업기간, 책임자 연락처, 작업허가여부, 출입금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「안내표지판」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.

#### □ 재개발 현장 석면 모니터링 등 주변 환경대책 추진

- 대규모 건축물 철거·해체 과정에서 주변 환경으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태파악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
  - '09년에 '재개발 현장 주변 대기중 석면 모니터링' 사업과 함께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공사장 관리방안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며, 중·장기적으로 관련법령 제·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.
  - 또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연구를 위해 1단계로 건강영향 상관성 검토 및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등 기초연구를 추진할 것이다.

#### □ 폐석면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·감독 강화

- 환경부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재개발 현장에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,
  - 폐석면 감독기관(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담당부서)으로 하여금 지자체 건축과 및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·철거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축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이다.

- 아울러, 발생된 폐석면은 '08. 8. 4일부터 인계·인수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는 "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"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폐석면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「재개발현장 석면합동대책단」 운영 등 석면 집중관리 ('09. 1월~)

- 6개 지방노동청별로 소속감독관, 지방환경관서, 안전공단 지도 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로 대책단을 구성하여 재개발현장에 대한 합동점검, 현안발생시 공동대책 마련, 석면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.
  - '09년 7월로 예정된 석면조사기관, 해체·제거업체 등록제 등의 시행을 앞두고 6월을 「석면안전 강조의 달」로 지정하여
    - 조사기관, 해체·제거업체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, 언론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석면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 실시 등 재개발 현장의 석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4. 한편, 노동부는 석면 해체·제거작업의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 전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조사 전문기관, 석면을 해체·제거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지정 및 등록제 추진 등 석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.

【 석면 해체·제거 인프라 구축 현황 】

○ 석면 해체·제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

- 석면 사전조사제 및 석면조사·분석기관 지정제 도입
- 석면해체·제거업체 등록제 도입 등

※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, '09. 7월 시행 예정

○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안 마련 및 제도시행 준비

- 조사·분석 : 조사기관 지정요건·기준 및 지정절차, 조사대상 및 예외사항, 공기 중 농도기준, 농도측정자격 및 방법 등
- 해체·제거 : 등록요건·기준 및 등록절차, 전문업체를 통한 해체·제거 대상 및 예외사항, 보존서류 내용, 신고절차 등
- 교육·평가 : 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기준, 교육과목·시간·대상, 기 실시한 교육의 인정여부, 정도관리, 평가방법, 공표방법 등

※ 조사·분석, 해체·제거, 교육·평가, 총괄·준비 등 4개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 인프라 구축 추진단 운영 중('08.11~12월)

※ 하위법령은 '08. 12월말 개정안을 마련, '09. 3월 입법절차 완료계획

※ 붙임 : 뉴타운 등 재개발현장 석면관리대책

뉴타운 등  
재개발 현장 **석면관리 대책**

2008. 12.

## I 배경

-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현장의 철거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집중보도 되고 NGO도 지속적 문제 제기

※ 뉴스리더, mbn('08. 10. 9),내일신문(10. 10), YTN(10. 11), 한겨레(10. 13), 조선일보(12. 1)

- '08년도 환경부 국감에서도 재개발현장의 석면관리가 관계부처간 공조미흡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

### 【 뉴 타 운 사 업 】

- ◆ 서울시가 종래 난개발로 이어지는 민간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
- '02년부터 3차에 걸쳐 26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중(붙임1 참조)

-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석면관리 대상도 확대될 전망

※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의 경우 기존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토록 「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」 입법추진 중

- 재개발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해서 관리가 어렵고 보상문제 등으로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
-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도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서 대책 필요

## III 재개발 사업 현황 및 문제점

### <현황>

- 서울시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총 35개 지구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(뉴타운/26개, 촉진지구/9개)이 진행 중(붙임1 참조)
  - 사업은 지구를 세분한 구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, 현재 19개 구역(14%)이 철거가 완료 되었고 119개 구역(86%)에서 철거 중(11개 구역)이거나 향후 철거 예정으로 석면관리 대상지역임
- 그 외 6개 광역시들은 부산/193, 대구/44, 인천/38, 광주/2, 대전/44, 울산/17개 구역 등 총 338개 구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
  - 철거가 완료된 18개 구역(5%)을 제외한 320개 구역(95%)이 석면관리 대상지역임(붙임2 참조)

### <문제점>

- 철거규모가 방대해서 감시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쉽고 철거만 끝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서 석면을 허술하게 관리할 개연성이 높음
  - 사전 석면조사 없이 일반 건축물처럼 중장비를 이용하여 마구 잡이로 철거하는 사례 발생

○ 발주자, 철거업자, 현장 관리감독자 등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석면의 해체·제거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작업장 관리에 소홀

○ 재개발현장이 밀집된 지방관서의 경우 소속 감독관만으로는 지도·감독 인력이 절대 부족

○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산안법의 보호법의 밖에 있는 미이주 주민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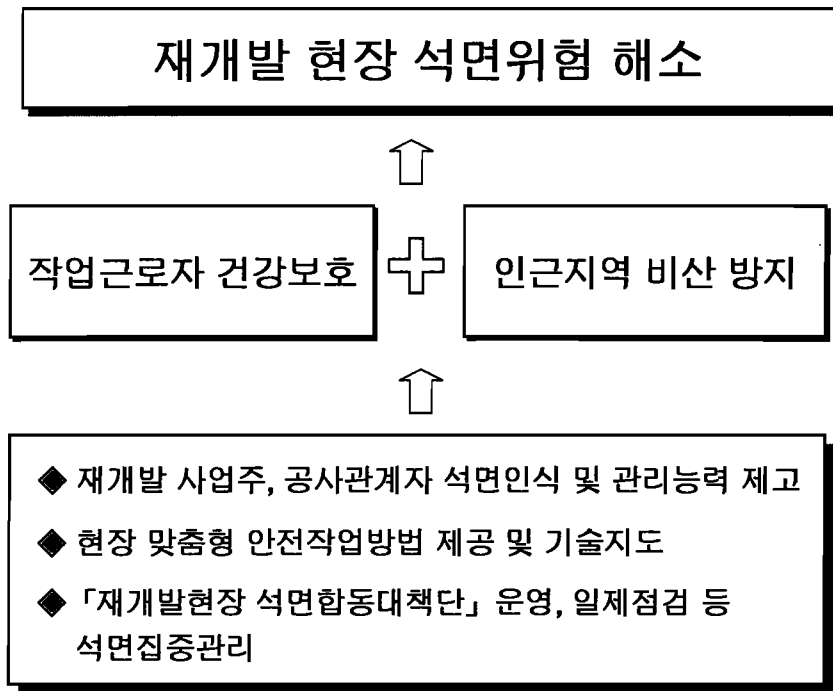
※ 시민환경연구소 측은 '08.10.9. 김상희 의원 주관 석면 심포지움에서 철거 현장 근로자는 보호되고 있으나 인근주민은 무방비라고 지적

○ 석면 해체·제거가 끝난 후 지붕 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고 현장에 방치되는 사례 발생

※ '08.11.23. SBS 의왕시 폐건물 철거공사 현장 슬레이트 방치사례 보도

※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소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거 관리

### III 석면 피해방지 대책



#### 1. 뉴타운 관계자의 석면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제고

##### □ 재개발현장 석면관리 정책설명회 개최('08.12월, 본부 및 서울청)

- 조합설립이 인가된 뉴타운 구역별 조합대표, 시공사 및 석면 해체·제거업체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개최
  - 석면의 유해성 및 작업수칙, 안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 등을 설명하고 추진방안 논의
- 환경부, 국토해양부, 지자체에서 석면 담당 책임자가 참석하여 각 부처 관련 정책 설명 병행

※ 서울청을 제외한 5개청은 자체 설명회(간담회) 추진(본부에서 정책 순회 설명)

- 석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 유도

#### □ 현장 관리감독자 등 교육('09. 3월~, 공단)

- 시공업체 및 해체제거업체의 관리감독자, 감리,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석면의 유해성, 관련 법규, 해체·제거 작업기준, 장비와 보호구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

※ 공단 교육원에 「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체험교육장」을 설치, 체험교육 병행 실시

- 서울·경인청을 제외한 4개청은 공단지도원과 협의하여 관내 재개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추진

## 2. 해체·제거 현장 작업방법 지도 및 지원

#### □ 철거예정 현장 석면조사 및 안전작업 방법 지도('09. 1월~, 공단)

- 관리처분계획인가(이주 및 철거) 단계에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석면분포실태에 따라 각 현장에 적합한 석면 제거방법 제공 및 기술지도

- 발주자 또는 철거업자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공단이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

- 조사결과에 따라 각 현장에 적합한 해체 및 폐기물 처리방법, 장비 및 보호구, 인근 비산방지대책 등을 마련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및 기술지원 실시

※ 공단의 6개 지역본부별로 지도요원과 석면 해체·제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석면전문가들로 「석면기술지원단」을 구성·운영

-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호구 지원 병행

□ 「석면 안전작업 매뉴얼」 개발·보급('09.2월, 본부, 공단)

- 석면 해체·제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및 작업방법 등 기본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주자, 시공업체, 지자체 등에 배포(5,000부)
- 해체·제거작업 종사자에게는 올바른 보호구 사용방법, 안전 작업수칙 등 근로자용 작업매뉴얼을 개발하여 포켓용 수첩으로 제작·보급(10,000부)

□ 석면작업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('09.1월, 지방노동관서, 공단)

- 석면 해체·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계지역에 석면작업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인근주민의 경각심을 제고
  - 작업기간, 작업책임자 연락처, 작업허가여부, 석면의 유해성, 출입금지 및 유의사항 등 안내

3. 「석면 안전강조의 달」 운영('09.6월)

◆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조사, 석면 해체·제거업체의 등록제 등 시행('09.7 예상)을 앞두고 제도를 안내하고 석면관리의 인식을 제고하는 행사 추진

□ 석면 인프라구축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(본부, 지방청)

- 석면조사·분석기관, 해체·제거업체의 지정 및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
- 지방청별로 추진하되 본부에서 제도 순회 설명

## □ 석면관리 관련 집중 홍보(본부)

- 신문·방송 매체 등을 통하여 석면 해체·제거시 사전조사, 조사·분석기관 및 해체·제거업체의 지정 및 등록제 시행 등 **변화된 제도 안내 및 정부대책 홍보**
-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는 동시에 석면에 대한 과도한 우려 해소 노력

## □ 석면 해체·제거현장 일제점검 실시(지방노동관서)

- 지방관서별로 재개발 현장 등 석면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석면 해체·제거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 실시하고 결과 보고
- 일제점검 세부지침 및 보고양식 등 추후 시달

## 4. 「재개발현장 석면합동대책단」 운영('09. 1월~, 지방청)

- 지방청별로 관내 지청 소속 감독관을 포함한 감독관, 공단지도요원 및 지자체 담당자로 석면합동대책단 구성('09. 1월 말까지 구성현황 본부 보고)
- 관내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, 현안 발생시 공동대책 마련 및 대응, 석면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재개발 현장 석면종합관리

붙임 : 1.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개요 및 석면관리 방안

2. 대도시 재개발(뉴타운 포함) 사업현황

##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개요 및 뉴타운 지구 내 석면관리 방안

### □ 뉴타운 사업 개요

- 뉴타운사업이란? : 종래 난개발로 이어지는 민간주도 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“기성 시가지 재개발 방식”을 도입한 종합적인 도시개발 사업
- 추진절차 : ①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(자치구) ② 지정요건 심의 (지역균형발전위원회) ③ 뉴타운사업 지구지정(서울시) ④ 개발기본 계획수립(시, 자치구) ⑤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(시장, 구청장)
- 지정현황 : '02년 3지구를 시범뉴타운으로 지정 이후, '03년 2차 12지구, '05년 3차 11지구를 뉴타운으로 지정하고, 촉진지구는 '03 시범 5지구, '05년 2차 3지구, '06년 재정비 1지구 등 지정
- 서울시 뉴타운 정비구역 면적
  - 정비구역 면적 : 27,218천㎡, 시행대상지역 면적 : 16,418천㎡

구 분	계		사업시행 대상지역		존치 지역	지구지정 시기	
	지구	면적(천㎡)	구역	면적(천㎡)	면적(천㎡)		
계	35	27,218	231	16,418	10,800		
뉴타운	소 계	26	23,980	174	14,696	9,284	
	1~2차	15	13,543	92	8,304	5,239	1차 : '02.10 2차 : '03.11
	3 차	11	10,437	82	6,392	4,045	'05.12 ※창신승인'07.4
균 측	1~2차	8	2,800	48	1,284	1,516	1차: '03.11 2차: '05.12
세운지구	1	438	9	438		'06.10	

- '03~'05년간 뉴타운지구 주택멸실 규모 : 12,104호
- '08~'12년간 뉴타운지구 주민이주계획 : 185,976세대

## □ 서울시의 뉴타운 지구내 석면 관리 방안

- 뉴타운 지구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석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,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장
  - 주택건설공사와 철거공사를 통합 발주시에는 감리자 지정권한이 있는 구청장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 감리자로 지정하고, 분리 발주시에는 철거공사 감리자를 별도 지정
- 주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철거공사의 감리자 지정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관리방안이 포함된 '철거계획서' 제출을 의무화

[붙임 2]

## 대도시 재개발(뉴타운, 재정비)사업 현황

### □ 서울특별시

사업 추진단계	소계	뉴타운지구 (주거지형)			균형발전촉진지구 (중심지형)		
		시범	2차	3차	시범	2차	재정비
재정비 촉진지구지정 (단위 : 지구)	35	3	12	11	5	3	1
사업시행계획(예정)구역 (단위 : 구역)	231	92		82	48		9
사업추진현황 구역	138 (60%)	85 (92%)		26 (32%)	26 (54%)		1 (11%)
		15	70	26	26		1
정비구역지정	38	1	31		6		
추진위원회 준비 및 승인	37		13	8	16		
조합설립준비 및 인가	30		11	17	2		
사업시행인가	3	1	1				1
관리처분계획인가(이주 및 철거)	11	3	8				
착공(공사 중)	13	4	6	1	2		
완공	6	6					

### □ 그 외 광역시

사업 추진단계	소계	6대 광역시					
		인천	대구	부산	울산	대전	광주
추진위원회승인	128		37	52	11	28	
정비구역지정	67	8	6	38	6	9	
조합설립인가	65	12	1	47		5	
사업시행인가	37	8		29			
관리처분계획인가 (이주 및 철거중)	23	4 (2)		18		1	
착공	11	4		4		1	2
완공	7	2		5			
<b>총계</b>	<b>338</b>	<b>38</b>	<b>44</b>	<b>193</b>	<b>17</b>	<b>44</b>	<b>2</b>

---

# 『뉴타운현장 석면관리 정책설명회』 개최 계획

- 노동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서울시 -

---

2008. 12. 22.

산업안전보건국

## **1** 목 적

- 최근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현장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간 공조 등 대처가 미흡하다는 국회·언론 지적
- 석면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 개최로 재개발 관계자들의 석면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

## **2** 일시 및 장소

- 일시 : '08. 12.22.(월) 15:00~16:30
- 장소 : 서울지방노동청 5층 컨벤션실(서울 중구 소재)
  - ※ 지하철 이용시 1호선 종각(4번출구), 2호선 을지로입구(4번출구), 3호선 을지로3가(1번출구), 4호선 명동(10번출구)

## **3** 참석대상 (붙임참조)

- 정부 관계자(정책설명)
  - 노동부 장관, 산업안전보건국장, 근로자건강보호과장(진행)
  - 환경부·국토해양부·서울시 담당 국장
- 설명회 참석자 : 112명
  - 서울시 구청 담당과장(21개소)
  - 뉴타운 등 구역별 조합대표 및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(44개소)
  - 시공사(20대) 및 석면 해체·제거 업체 대표(27개소) 등

## 4 행사내용 및 순서

- 노동부 장관 인사말씀
- 각 부처별 석면관리 주요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
- 결의문 낭독 및 석면관련 전시물 관람
- 진행순서

시 간	진행내용	비 고
15:00~15:10(10분)	장관 인사말씀	노동부장관
15:10~15:20(10분)	석면 유해성 및 대책(영상물)	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
15:20~16:00(40분)	각 부처별 정책설명 - 노동부(10분) - 환경부(10분) - 국토해양부(10분) - 서울시(10분)	해당부처 국장급
16:00~16:20(20분)	질의응답	(예상질의 준비)
16:20~16:30(10분)	결의문 낭독 (두산건설 등)	시공사 및 조합대표, 석면 해체·제거업체 대표

※ 설명회가 끝난후 석면 보호구 및 안전장비, 사진 판넬 등 전시물 관람